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차 례 ◇

1. 개 요 ····· 1
1-1 자산운용지침 개요 ····· 1
1-2 기금 개요 ····· 1
2. 자산운용관련 법규 ····· 2
3.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 2
3-1 자산운용 목적 ····· 2
3-2 자산운용 원칙 ····· 2
4.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 3
4-1 의사결정 Process ····· 4
4-2 자산운용 조직 ····· 4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 5
5-1 목표수익률 ····· 5
5-2 허용위험도 ····· 5
6.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 ····· 6
6-1 운용자금의 분류 ····· 6
6-2 자금수지의 항목 ····· 6
6-3 적정 단기자금 규모 추정 결과 ····· 7
7. 자산배분 ····· 8
7-1 투자대상 자산 ····· 8
7-2 자산배분 정책 ····· 9
7-3 자산배분안 ····· 9

8. 위험관리정책 ····· 10
8-1 위험의 정의 ····· 10
8-2 위험 종류별 관리방안 ····· 10
8-3 위험관리 조직 및 역할 ····· 12
8-4 위험관련 보고체계 ····· 12
9. 내부운용 및 외부위탁운용 ····· 13
9-1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의 배분정책 ····· 13
9-2 외부위탁기관 선정원칙 ····· 13
9-3 외부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방법 ····· 14
10. 성과평가 ····· 15
10-1 성과평가 원칙 ····· 15
10-2 성과평가 주기 ····· 15
10-3 성과평가 결과보고 ····· 15
10-4 성과평가 기준 ····· 16
11. 감사 및 공시 ····· 17
12. 주식투자 시 의결권 행사행위준칙 ····· 17
13. 행위준칙 ····· 17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 개요

이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서 자산운용지침의 내용은 1년 단위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작성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1-2 기금 개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 17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용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의해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된 재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액(모금은 2004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음),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입니다. 2008년 말 현재 1조8,910억원이 조성되어 1조4,819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 말 현재 적립금은 4,091억원입니다.

2. 자산운용관련 법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산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가 규정한 바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3.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산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러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한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이외의 여유자금은 중장기로 운용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3-2 자산운용 원칙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산은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의거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안정성을 위해 확정금리상품인 정기예금 등의 상품에, 수익성을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중장기자산운용분석을 통해 1년 미만인 단기자금과 1년 이상인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금의 수급여건과 시장상황을 검토하여 허용위험 범위내에서 고수익을 거양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4-1 의사결정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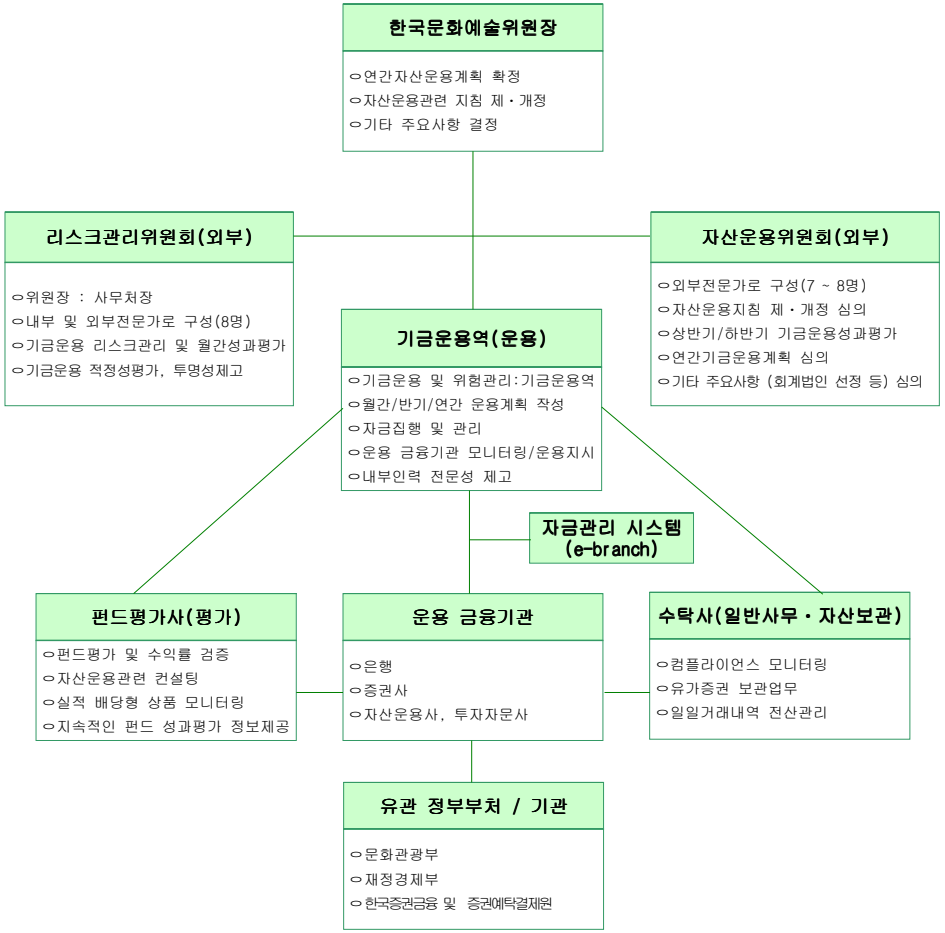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기금운용역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4-2 자산운용 조직

4-2-1 운용부서(운용)

기금운용 부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의 주무부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역에 위치하며, 시니어 운용역인 기금운용역(운용)과 주니어 운용역인 기금담당자(위험관리) 2인이 자산운용 실무 등 기금운용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4-2-2 자산운용위원회(외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7 ~ 8인으로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자산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4-2-3 리스크관리위원회(외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및 기금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 위원은 검사역, 경영지원팀장, 기금운용역, 펀드평가사 담당자, 공인회계사, 리스크관리 및 평가전문가, 경제분석 및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포함 8인의 내부직원 및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월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파생상품 등 신규상품 투자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 기금운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2-4 리스크관리위원회(평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운용중인 금융기관 실적배당형 상품에 펀드평가 및 수익률 검증, 신용등급 위반 등 모니터링을 위해 외부펀드평가사를 통해 매월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5-1 목표수익률

문예진흥기금은 목표수익률의 개념을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제약조건이며 전략적 자산배분안에 앞서 사전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기대수익률(물가상승률+α)”로 정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연간 포트폴리오의 최적자산배분비율 및 기준수익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연간 포트폴리오의 최대 목표기대치)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안정된 문예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해 운용수익률이 ‘우량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이 돼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5-2 허용위험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정한 허용위험도 산출을 위해 투자상품의 과거 시장변동성을 파악하고, 추정기간의 합리성과 상품별로 동일한 추정기간을 적용하여 가장 적정한 변동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상품의 상관계수를 고려한 기대수익률과 95% 신뢰수준의 VaR(Value at Risk)를 적용하여 기금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손실한도를 결정하며, 그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08년도 허용위험도는 95% 의 신뢰수준으로 연간 VaR를 299억원(8.00%)로 설정하였습니다.

6.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

6-1 운용자금의 분류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자금은 아래와 같이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으로 분류합니다.

자금분류		자금내용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 · 만기 3개월 미만의 자금
	유동성자금	·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금 ·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금
장기자금		· 자금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 · 장기자금 = 총운용자금 - 단기자금

6-2 자금수지의 항목

문예진흥기금은 자금의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수입항목은 기금운용수익, 기부금,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항목은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수지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금수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6-3 적정 단기자금 규모 추정 결과

기금이 설정한 목표수준인 95% 하에서의 단기자금 규모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약 293억원으로 추정되며, 전체 운용대상 자금 3,801억원 중장기 투자가능 운용자금 규모는 3,508억원입니다.

[적정 단기자금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5%	
		누적	월간
현금성 자금	1개월	94	94
유동성 자 금	2개월	125	31
	3개월	149	24
	4개월	170	20
	5개월	188	18
	6개월	204	16
	7개월	219	15
	8개월	233	14
	9개월	246	13
	10개월	258	12
	11개월	270	12
	12개월	281	11

7. 자산배분

7-1 투자대상 자산

법률상으로는 국가재정법 제62조에 의하여 주식, 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62조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투자가능자산]

□ **주식 및 주가지수 파생상품**

○ 상장주식(거래소) 및 등록주식(코스닥)

○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 채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회사채권 등

- 자산유동화 증권 (ABS)
-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 신종채권(연계채권 및 구조화채권)

○ 채권관련 파생상품

-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옵션
- 금리스왑거래

○ 수익증권

- 신탁업법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Mutual Fund)

○ 유동성자산

-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어음, 정기예금, MMDA, MMF, RP 등

7-2 자산배분 정책

자산배분은 중장기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금의 중장기 목표수익과 허용위험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산운용 목적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정성을 우선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허용위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7-3 자산배분안

7-3-1 포트폴리오의 설정방법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무위험 자산(정기예금 등), 주식, 채권 등 각 자산군 별 기대수익률 및 리스크(변동성) 그리고 상관계수를 기초로 효율적 프론티어상의 복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 가운데에서 위험대비성과(예상수익률/표준편차)가 가장 높고, 신뢰수준이 높은 최적자산의 조합으로 기본포트폴리오를 결정합니다.

7-3-2 2009년 자산배분 안

(단위 : 억원, %)

구 분		95% 목표수준	
		금액 (억원)	비중 (%)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94	2.52
	유동성자금	187	5.01
단기자금 소계		281	7.53
중장기자금	주 식	269	7.21
	채 권	3,186	85.27
중장기자금 소계		3,455	92.48
총계(운용가능자금)		3,736	

※정기예금 등과 같은 확정부상품의 경우 만기 보유시 채권과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자산에 포함. 중장기자금 내 주식은 주식형펀드를 의미

7-3-3 자산배분 조정(Rebalancing)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자산의 시가구성비를 허용위험도(VaR값) 범위 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 자산배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검증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환경 변화 등 제반 조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재조정(Rebalancing)하고 있습니다.

8. 위험관리정책

8-1 위험의 정의

위험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리스크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8-2 위험 종류별 관리방안

ㅇ 시장위험(Market Risk)의 관리

"시장위험"은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으로서 Value at Risk(VaR)로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별 허용위험의 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식 :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과 손실한도를 설정
- 금리 : 종목 및 업종별 분산투자 기준, 듀레이션 기준, 총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설정
- 환율 : 투자목적별 총 한도를 설정

ㅇ 신용위험(Credit Risk) 관리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서 위험노출도(Exposure), 예상손실(Expected Loss), 비예상손실(Credit VaR) 등으로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발행기관의 신용위험 및 거래기관의 신용위험은 거래대상 제한 및 총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신용평가등급이 채권의 경우 BBB+ 이상(부동산 담보권 및 보증 등이 있는 경우 BBB- 이상), CP의 경우 A2- 이상인 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관리

"유동성위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금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집행을 원활히 못하는 위험이며 둘째는 기금 보유자산의 시장 내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거나 현금화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기금의 유동성위험은 기간별 자금 수급의 예측 및 유동성 갭(Gap)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시장의 유동성 위험은 신용위험허용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운용위험(Operation Risk) 관리

"운용위험"이라 함은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하여 운용조직과 Back office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운용담당자의 규정 준수 여부 및 실물, 위탁자산 점검 등을 검사역실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3 위험관리 조직 및 역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리스크관리 최고 책임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며 리스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기준의 수립·변경, 위험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엄격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수탁사, 펀드평가사의 지원 아래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4 위험관련 보고체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위험과 관련한 보고체계(정기, 수시보고)와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인식했을 경우 먼저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보관·유지하며, 자산운용위원회는 위험관련 보고결과 및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실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내부운용 및 외부위탁운용

9-1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의 배분정책

문예진흥기금은 내부 전문인력을 통한 내부운용(직접투자) 또는 외부 전문운용사를 통한 외부운용(위탁투자)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내부운용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을 외부운용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운용은 사전에 수립된 위탁운용의 목표와 자산별 투자계획, 운용사에 대한 자금위탁계획, 운용사 선정에 관한 사항, 위탁투자계약 및 외부위탁투자지침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연간 기금운용계획 및 위탁운용계획에 의해 이뤄집니다.

9-2 외부위탁기관 선정원칙

외부위탁기관 선정 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내부평가지표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위탁기관별, 상품별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9-3 외부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방법

제1금융권의 확정부상품 예탁대상인 은행은 연간선정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40%), 신용등급(30%), 무수익여신비율(10%), 총자산이익률(10%), 총자산규모(10%) 고려하여 제시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을 활용합니다.

제2금융권의 상품투자는 판매사인 경우 연간선정기준인 자본금 규모(40%), 자기자본비율(30%), 자산부채비율(20%), 영업순자본비율(10%) 등을 평가하며, 운용사는 1차기준인 예탁자산의 안정적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수탁고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2차기준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수익률 등의 운용성과 및 제시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합니다.

위탁기관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수익률 제고방안, 운용방법의 변경 요구 및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계약위반 시에는 즉시 해소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용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을 따릅니다. (2006년 7월1일부 제정)

10. 성과평가

10-1 성과평가 원칙

문예진흥기금의 성과평가는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평가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도 고려합니다.

성과평가는 단순히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위험을 고려한 평가를 병행합니다.

성과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0-2 성과평가 주기

자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자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3년 이상의 장기적인 평가도 병행합니다.

또한 기금의 특성상 3년 이상의 중장기평가를 위주로 자산배분정책 등 투자전략의 변경, 외부 운용기관의 재선정 등을 결정합니다.

10-3 성과평가 결과보고

평가 결과는 매 연간, 분기, 반기 별 정례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연간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4 성과평가 기준

ㅇ 성과평가 기준

순자산가치(NAV)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수익률은 현금흐름에 대하여 조정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또한 상품별로 기준수익률을 설정하고, 확정금리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수익률대비 초과수익률 평가를,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수익률대비 초과수익률 평가 및 위험을 고려한 평가(IR, Sharp비율 등) 그리고 상대적인 평가(상품유형 내 %랭킹)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기준수익률 설정

기준수익률은 운용성과의 평가지표가 되는 수익률로서 투자자산별 시장평균 수익률을 기준수익률로 산정하고 있으며, 기금 전체는 [∑ 상품별 기준수익률×투자 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확정금리부 :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 현금성자금 : CD 91일물 금리지수
- 채권형펀드 : KB국고채6개월 ~ 1년지수(80%)+ CD91일물금리(20%)
- 주식형펀드 : KOSPI지수(95%)+ CD 91일물 금리지수(5%)
- 혼합형펀드 : KOSPI지수(30%)+ KB국고채6개월 ~ 1년지수(70%)

11. 감사 및 공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운용에 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독립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12. 주식투자 시 의결권 행사행위준칙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주주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목적 외에 경영권 참여 등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3. 행위준칙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든 자산운용담당자(이하 직원)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합니다.

- 직원은 관계법령, 기금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기금 자산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금임을 인식하고, 개인이나 소속 조직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직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 최대화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 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